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
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중

1. 의결주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를 통합하여 출범하는 국립경국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3명, 조교 4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7명)을 증원하면서 국립의 각급 학교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치하고, 국립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30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330명), 국립대학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6급 4명, 7급 4명, 8급 4명), 국립대학의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6명) 및 국립대학의 발달·중증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각각 국립의 각급 학교에 증원하는 한편,

국립의 각급 학교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4명, 조교 5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2항 중 “98명”을 “99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한시정원)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중 총계 “26,582”를 “26,962”로 하며, 교육공무원 계 “20,468”을 “20,821”로 하고, 대학 계 “18,735”를 “19,088”로 하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5,830”을

“16,179”로, 조교 “2,868”을 “2,872”로 하고, 교감 10 다음에 “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362”를 신설하며, “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
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함한다) 36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087”을 “6,11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05”를 “6,032”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26,950
교육공무원 계	20,821
대학 계	19,088
총장	37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6,179
조교	2,872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801
교장	17
교감	17
교사	76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428
교장	16
교감	16
교사	396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9
원장	1
원감	3
교사	15
특수학교 계	378
교장	6

교감	10
교사(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362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86
보건교사	41
영양교사	30
사서교사	12
전문상담교사	3
교육전문직 계	21
교육연구관	7
교육연구사	14
별정직 계	27
고위공무원단	18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9
일반직 계	6,102
3급 또는 4급 이하	6,020
전문경력관	82

[별표 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조 관련)

제3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총계	19
교육공무원 계	19
대학 계	19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14
조교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u>국립의</u> <u>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u> <u>원은 별표와 같다.</u>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u>별표에 따른 총정</u> <u>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u> <u>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u> <u>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u> <u>수 있다.</u> ② <u>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u> <u>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u> <u>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u> <u>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u> <u>포함한다)의 정원은 98명을, 3</u> <u>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u> <u>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u> <u>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u> <u>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u> <u>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u> <u>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u> <u>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u> <u>15를 그 상한으로 한다.</u> <u><신 설></u>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u>국립의</u> <u>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u> <u>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u> <u>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u> <u>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u> <u>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u> <u>다. ----- 별표 1-----</u> <u>-----.</u> ② ----- ----- ----- ----- ----- 99명 ----- ----- ----- ----- ----- ----- ----- ----- -----. <u>제3조(한시정원) <u>국립경국대학교</u></u> <u>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u> <u>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u>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
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582</u>	<u>26,962</u>	+380
교육공무원 계	<u>20,468</u>	<u>20,821</u>	+353
대학 계	<u>18,735</u>	<u>19,088</u>	+353
·	·	·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u>15,830</u>	<u>16,179</u>	+349
조교	<u>2,868</u>	<u>2,872</u>	+4
·	·	·	
·	·	·	
교감	10		
<u>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u> <u>중학교 · 고등학교 및</u> <u>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u> <u>수학급 담당 특수교사</u> <u>를 포함한다)</u>	<u><신 설></u>	<u>362</u>	+362
<u>교사(유치원 · 초등학교 ·</u> <u>중학교 · 고등학교 및</u> <u>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u> <u>수학급 담당 특수교사</u> <u>및 특수 치료교사를 포</u> <u>함한다)</u>	<u>362</u>	<u><삭 제></u>	-362
·	·	·	

·	·	·	
일반직 계	<u>6,087</u>	<u>6,114</u>	+27
3급 또는 4급 이하	<u>6,005</u>	<u>6,032</u>	+27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08